

#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일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5. 2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84호)

나. 회부일자 : 2016. 6. 7.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16. 6. 10.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가. 제안이유

공정무역 센터(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공정무역 센터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범위와 의무,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계획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성북구’ 를 ‘구’ 로 바꿔 명칭을 간결화 함.

(안 제5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호)

2) 위원회의 기능에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함. (안 제16조제3호 신설)

3)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기업’ 으로 확대함. (안 제25조제2항 제3호)

4) 민간위탁 기간을 명시하고 재위탁 할 경우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25조의2 신설)

5)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25조의3 신설)

- 6) 위탁계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계약취소시 재산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4 신설)
- 7) ‘성북구 공정무역’ 을 ‘공정무역’ 으로 개정함. (안 제26조제2호)
- 8) ‘성북구’ 를 ‘관내’ 로 개정함. (안 제29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안 제16조제3호(위원회 기능)는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에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 분야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확대와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나, 현재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의 저변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고, 법적 기반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도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정무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나. 안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제2항제3호는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범위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 제한되어 수탁자의 범위가 좁고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수탁자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안 제25조의2부터 4까지의 신설 사항은 공정무역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을 같은 조례 제24조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근간으로,

센터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방법과 수탁기관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취소 시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자산 반납 등 재산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기적절하다 사료됨.

라. 그 밖의 개정사항은 반복·중복되는 명칭을 간결화하는 것으로 제5조, 제11조, 제14조의 조문 중 ‘성북구’ 를 ‘구’ 로 변경하고, 제26조의 조문 중 ‘성북구 공정무역’ 을 ‘공정무역’ 으로, 제29조 ‘성북구’ 를 ‘관내’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종합하여 본 개정안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책임과 권한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무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한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5조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6. 4. 14. ~ 2016. 5. 4.)